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08일

호명읍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백 *기	백 *기 1966-03-13	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양지9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1-08
장 *향	장 *향 1987-04-30	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양지9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1-08
정 *민	정 *민 1999-02-11	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4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1-08